

# 협 회 일 보

## 환경부, 제4차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 시행 안내

- ◇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첨단 감시장비 활용 단속 추진
- ◇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부산·대구광역시까지 확대

환경부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4차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('22.12~'23.3\*)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\*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(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)

이에 각 환경청 환경감시단, 지자체 등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소각시설,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드론,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불법배출 및 불법 소각 등을 집중점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지역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및 대구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어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
### 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주요 점검 사항 〉

#### ※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점검

- 점검대상 : 공장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 의심 사업장과 소각시설, 공사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
- 점검방법 : 드론·이동측정차 등으로 비대면 감시, 민간점검단(약 1천명) 상시 순찰·점검,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한 감시·단속 활성화
- 점검사항 : 무허가(미신고) 대기배출시설 설치·운영 여부,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,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, 불법소각 등 폐기물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

#### ※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

- 단속대상 :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및 부산·대구광역시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(차량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으로 산정\*\*) 단,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예외

#### \*\*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

차량 유형	휘발유, 가스	경유
경형, 소형, 중형	<b>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</b>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5.30 g/km 이상)	<b>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</b> (질소산화물+탄화수소 : 0.56 g/km 이상, 입자상물질 : 0.05 g/km)
대형, 초대형	<b>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</b> (질소산화물 : 5.5 g/kWh 이상, 탄화수소 : 1.2 g/kWh 이상)	<b>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</b> (질소산화물 : 5.0 g/kWh 이상, 탄화수소 : 0.66 g/kWh 이상)

- 시행시기 : 매년 12월 ~ 3월, 오전 6시 ~ 오후 9시(주말·공휴일 제외)
- 참고사항 : 광주·대전·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('23.12~'24.3)에 시행 예정